

업무(행사)계획

국가표준화 개선 방안 및 09년도 표준화 계획

지식기반표준과
02-509-7258

1. 국가표준화 현황

- 국가표준의 연구개발부터 제정까지 평균 12~25개월 소요
- 국제표준 도입에 평균 12개월 소요
 - * 학술연구용역(7~9개월) → 사전 검토(1개월) → 법정 예고고시 기간(2개월) → 기술심의회 검토 및 고시(1개월) : 총 11~13개월

회 검토(2개월) · 법정 예고고시 기간(2개월) · 기술심의회 검토 및 고시(1개월) : 총 19~31개월

- ISO(특별절차서, 2.9 규격의 유지) 및 산업표준화법(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)에 의거 국가표준은 5년 주기 확인
- 신속한 국제표준 동향 반영 곤란
 - * 연간 1,000여건의 국제표준 변화에 신속한 대응 필요

〈연도별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도입 현황〉

구 분	총 제정(종)	국제표준 도입		자체 개발	
		종	%	종	%
2004	1,988	1,786	89.8	202	10.2
2005	1,656	1,399	84.4	257	15.6
2006	995	820	82.4	175	17.6
2007	916	743	81	173	19
2008	483	371	76.8	112	23.2

〈 연도별 국제표준 제·개정 현황 〉

(단위 : 종)

	계	제조업	비제조업
2004	1,247	1,144	103
2005	1,240	1,142	98
2006	1,388	1,297	91
2007	1,105	1,003	102

-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표준개발에서 제정까지 평균 25개월 소요

*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을 통한 표준개발(12~24개월) · 표준정비 및 제정신청(2개월) · 선문위원

※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및 국제동향에 국내 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변화를 모니터링하고, 국가표준 제정기간 단축 등 국가표준에 신속한 반영 필요

2. 국가표준화 개선 방안

기본 방향

신속한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산업 지원

신기술·제품 및 국제동향 변화 등을 국가표준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산업화 지원 및 국제경쟁력 향상 도모

□ 국가나 산업계에서 조기 제정을 요구하는 국가표준에 대해서는 '신속처리절차'를 마련하여 기간 단축

○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) 혹은 표준기술연구회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친 개발(안)은 전문위원회 검토 없이 제정토록 추진 ('09.1~)

- * 신속처리절차(안) : 필수 성능 내용만을 표준으로 개발 · 전문위원회 검토 생략 · 기술심의회 심의만을 거쳐 제정
- * 신속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COSD 확대 추진 : '09.2, '09.4 등 2회 ('08년 : 14개 기관 → '09년 : 30개 기관)

○ 신속 제정 후 1년간 유지·관리하며 필요시 개정

- * 단축 내용 : 개발부터 제정까지 6개월, 제정 후 1년간 재검토

□ 기업과 국민의 표준화 요구에 신속 대응을 위하여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에 인터넷 '기술 표준 신문고' 개설('09.1.2)

○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요구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

국가표준에 반영

- 단기과제 : COSD 또는 기표원내에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·운영하여 신속히 대응
- 장기과제 :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또는 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추진

□ 국가표준 예고기간 단축

○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시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고고시 기간을 반으로 단축('09.11)

-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국내 현황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

- * 단축 내용 : 현 60일 → 30일 단축(별요시 공청회 1회 개최)

- * 시행령 개정(안) 마련 : '09.3, 시행령 개정 : '09.11

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(안) 〉

현 행	개 정
제16조(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)제 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. 다만,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.	제16조(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)제 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60일로 한다. 다만,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 또는 선진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.

□ 국제표준이 개정·폐지된 경우에는 5년 주기가 되지 않아도 국가표준에 반영토록 표준담당관이 지속적 국제표준 모니터링 ('09.1~)

○ 특히, COSD가 지정된 분야는 국제표준 정보망을 지원하여, 관련업계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표준에 반영 조치

3 '09년 국가표준화 계획

◆ 제정 : 313종, 개정 : 1,199종,
확인 : 2,500종, 폐지 : 105종

□ 녹색성장 관련 그린스탠더드 제정 계획 : 150여종

○ 기후변화협약 대응 분야 :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, 자동차용 천연가스 등 20여종

○ 자원순환·에너지효율 분야 : 철근 콘크리트 보강재,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10여종

○ 그린에너지 분야 : 태양광 시스템, 연료전지, 원자력 시설 등 50여종

○ 신성장동력 분야 : 조명용 LED, 그린카 충전기, 동물용 RFID 등 70여종

* 특히 최근 이슈화된 'LED 조명 제품 표준(09.2) 과 국민 편익을 위한 '디지털 컨버터 박스'의 표준(09.하반기)'은 신속 제정 추진

□ 생활공감표준 제·개정 계획 : 50여종

○ 인체 측정자료를 활용한 가구 치수 표준화 : 15종

○ 형광램프 및 가정용 안전기 관련 표준 : 14종

○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 관련 표준 : 24종

□ 국민안전,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계획 : 110여종

○ 가스기기 등 민원이 많은 안전 관련 표준 : 10여종

○ 수질, 월제어, 고객만족 등 삶의 질 향상 표준 : 50여종

○ 정보보안, 이-러닝, 생체인식 등 IT 표준 : 50여종

| 기술표준 2009.2